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외해양식업

양식업의 종류	양식방법	양식장 구역의 한계 (단위: ha)		양식장 사이의 거리 (단위: m)	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(단위: %)
		어촌계 (지구별수협)	어촌계 (지구별수협) 외의 자		
외 해 가 두 리양식업 외 해 수 하 식양식업	외해	5 이상	5 이상	500 이상	2 이상 20
	가두리식	60 이하	60 이하		이하
	1) 건홍식	1 이상	1 이상	200 이상	5 이상 18
	2) 연승식	1 이상	20 이하 1 이상 20 이하	100 이상	이하 5 이상 10 이하 (미역·다시마 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	개정안					
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[별표 3]						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[별표 3]					
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, 양식장 사이의 거리,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(제9조제1항 관련)						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, 양식장 사이의 거리,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(제9조제1항 관련)					
1~5. (생략)						1~5. (현행과 같음)					
6. 외해양식업						6. 외해양식업					
양식업 의 종류	양식방법	양식장 구역의 한계 (단위: ha)		양식 장 사이 의 거리 (단위 : m)	양식장면 적에 대한 시설비율 (단위: %)	양식업 의 종류	양식방법	양식장 구역의 한계 (단위: ha)		양식 장 사이 의 거리 (단위 : m)	양식장면 적에 대한 시설비율 (단위: %)
		어촌계 (지구별 수협)	어촌계 (지구별 수협) 외의 자					어촌계 (지구별 수협)	어촌계 (지구별 수협) 외의 자		
외해가 두리양 식업	외해가 두리식	5 이상 60 이하	5 이상 60 이하	500 이상	2 이상 20 이하	외해가 두리양 식업	외해가 두리식	5 이상 60 이하	5 이상 60 이하	500 이상	2 이상 20 이하
						<u>외해수</u> <u>하식양</u> <u>식업</u>	<u>1) 건홍식</u>	<u>1 이상</u>	<u>1 이상</u> <u>20 이하</u>	<u>200</u> <u>이상</u>	<u>5 이상 18</u> <u>이하</u>

비고
(생략)

	<u>2) 연승식</u>	<u>1 이상</u>	<u>1 이상</u> <u>20 이하</u>	<u>100</u> <u>이상</u>	<u>5 이상 10</u> <u>이하</u> <u>(미역·다</u> <u>시마의</u> <u>경우에는</u> <u>5 이상 20</u> <u>이하)</u>
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비고
(현행과 같음)